

瑞山市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
審 查 報 告 書

1. 審 查 經 過

- 가. 提出日字 : 1998. 3. 31
- 나. 提出者 : 瑞 山 市 長
- 다. 回附日字 : 1998. 3. 31
- 라. 上程日字 : 1998. 4. 9

2. 提案說明要指(提案說明: 總務課長 朴相龍)

가. 提案理由

- 현행 건설과의 공유수면 관련 업무중 바다부분 및 빈지부분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과에 이관시켜 상부기관과 업무처리 체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.

나. 主要骨子

- 해양수산과 분장사무에 공유수면(바다부분, 빈지) 유지·관리를 신설 규정함(안 제8조 제8항).
- 건설과 분장사무에 공유수면(육지부분 - 하천, 호소등) 유지·관리 및 매립 관련 사항을 신설 규정함(안 제9조 제2항).

### 3.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指

- ◎ 본 개정 조례(안)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·운영되고 있는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로
- ◎ 현행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 제8조(사회산업국) 제8항 해양수산과 분장사무중 제14호에 공유수면 매립 관련 업무와, 제9조(건설도시국) 제2항 건설과 분장사무중 제10호에도 도로, 하천, 공유수면 유지관리를 말도록 되어 있어서 과간 공유수면에 관한 업무의 한계가 불분명 하므로,
- ◎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개정 조례(안)에 해양수산과는 공유수면의 바다부분·빈지 유지관리 및 매립관련 사항을, 건설과는 공유수면의 육지부분 하천, 호소등 유지관리 및 매립에 관련된 업무를 분리하여 말도록 하고자 분장사무의 일부를 변경 조정 하려는 것으로
- ◎ 개정하여도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主要質疑 및 答辯要指 : 없었음

5. 討 論 : 없었음

6. 少數意見 : 없었음

7. 審査結果 : 원안대로 가결

제안번호	제 182호
의결년월일	1998. . . (제 회)

##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8. 3. 21

#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안 번호	18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3. 21.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## 1. 개정 이유

현재 건설과의 공유수면 관련 업무중 바다부분 및 빈지부분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과에 이관시켜 상부기관과 업무처리 체계를 유지하여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 골자

가. 해양수산과 분장사무에 공유수면(바다부분, 빈지) 유지·관리를 신설 규정함  
(안 제8조제8항).

나. 건설과 분장사무에 공유수면(육지부분 - 하천, 호소등) 유지·관리 및 매립관련 사항을 신설 규정함(안 제9조제2항)

##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8항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4. 공유수면(바다부분, 빈지) 유지·관리 및 매립관련 사항

제9조제2항중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제11호 내지 제17호를 제12호 내지 제18호로 하며, 같은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도로, 하천 유지 및 관리

11. 공유수면(육지부분 - 하천, 호소등) 유지·관리 및 매립관련 사항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8조(사회산업국)</p> <p>① ~ ⑦ (생략)</p> <p>⑧ 해양수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13. (생략)</p> <p>14. <u>공유수면매립 관련업무</u></p> <p>15. (생략)</p> <p>⑨ (생략)</p> <p>제9조(건설도시국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<u>도로, 하천 공유수면의 유지·관리</u></p> <p>(<u>신설</u>)</p> <p>11. ~ 17. (생략)</p> <p>③ ~ ⑦ (생략)</p>	<p>제8조(사회산업국)</p> <p>①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⑧ _____</p> <p>_____.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<u>공유수면(바다부분, 빈지)유지·관리 및 매립관련 사항</u></p> <p>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건설도시국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_____</p> <p>_____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도로, 하천 유지 및 관리</u></p> <p>11. <u>공유수면(육지부분-하천, 호소등) 유지·관리 및 매립관련 사항</u></p> <p>12. ~ 18. (현행 제11호 내지 제17호와 같음)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